

202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2021년 3월 29일 발효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근무한 해당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을 하는 즉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최대 80시간의 COVID-19 관련 병가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021년 3월 29일 이전에 아래의 사유로 휴직했다면, 해당 직원은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관리:** 직원이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회사가 있는 관할권의 지역 의료 담당자의 명령 또는 지침에 의해 정의된 COVID-19와 관련된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적용 대상자이거나 혹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 제공자의 조언을 받았거나, COVID-19 증상을 경험하고 의학적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 관리:** 해당 직원이 COVID-19 검역 또는 격리 기간이 적용되거나 COVID-19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격리 권고를 받은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구내 COVID-19로 인해 학교 또는 돌봄 장소가 폐쇄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 **백신 관련:** 해당 직원이 백신 예약에 참석 중이거나 백신 관련 증상으로 인해 업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직원을 위한 유급 휴가

- 풀타임으로 간주되는 직원의 경우 80시간이 적용됩니다. 풀타임 소방관들은 80시간 이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정규 주간 일정이 있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직원이 일반적으로 2주 동안 근무하도록 예정된 시간입니다.
 - 일정이 가변적인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의 14배입니다.
-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지급 요율: 추가 수당 비면제 직원은 각 휴가 시간에 대해 다음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휴가가 발생한 주 노동 일에 대한 정기 급여 요율
 - 주 최저 임금
 - 지역 최저 임금
 - 이전 90일간의 평균 시급(초과 근무 수당 미포함)추가 수당 면제 직원은 다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계산된 임금과 동일한 비율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1년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경우, 하루에 \$511 및 총 \$5,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해당 직원에 대한 보복 또는 차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보복이나 차별을 경험한 해당 직원은 노동위원 사무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dir.ca.gov/dlse/DistrictOffices.htm>에서 도시, 위치, 커뮤니티의 알파벳순 목록을 사용하여 사무소 목록을 보고 사무소 위치를 찾거나 1-833-536-4636으로 연락하십시오.

포스터는 직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실제 작업장에 자주 오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